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이 「국가철도공단법」으로 개정(법률 제17460호, 2020. 06. 09. 개정, 2020. 09. 10. 시행)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등 9개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국가철도공단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**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
일부개정령안**

제1조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 3. 공기업·준정부기관란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 3. 투자 및 출연기관란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③구입기관 분류 3. 투자 및 출연기관란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3호, 제15호 및 제16호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각각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도로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제5조(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 제7조”를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6조(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5호의6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 3. 투자 및 출연기관란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의7서식 뒤쪽의 ③구입기관 분류 3. 투자 및 출연기관란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6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 제7조제4호”를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 제7조제4호”로 한다.

제8조(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」의 개정)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(이하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국가철도공단(이하 “국가철도공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

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”을 “국가철도공단이사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3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철도국) ①·② (생략)	제14조(철도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한국철도시설공단</u> 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	3. <u>국가철도공단</u> ----- -----
4. ~ 14. (생략)	4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<u>한국철도시설공단</u>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	15. <u>국가철도공단</u> ----- -----
16. <u>한국철도시설공단</u>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	16. <u>국가철도공단</u> ----- -----
17. ~ 21. (생략)	17. ~ 21. (현행과 같음)
④ ~ ⑪ (생략)	④ ~ ⑪ (현행과 같음)
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<제4조 관련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) 영 제73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	제35조(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	3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 <제5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철도) 이 절에서 “철도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 제7조 및 「한국철도공사법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	제22조(철도)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 제7조 - ----- ----- -----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7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)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·버스터미널·공항 등의 개발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.	제8조(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5. (생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 제7조제4호, 「한국철도공사법」 제13조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	16. 「국가철도공단법」 제7조 제4호----- ----- ----- -----
17. ~ 22. (생략)	17. ~ 22. (현행과 같음)

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8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) ① (생략)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 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되는 <u>한국철도시설 공단(이하 “한국철도시설공 단”이라 한다)</u> 의 부속 연수기 관 5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제2조(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국가철도공단</u> (이하 “ <u>국가철도공단</u> ”이라 한 다)----- --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권한의 위탁) ①국토교통 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 의 설치·운영업무를 <u>한국철도 시설공단에</u> 위탁한다. ②·③ (생략)	제12조(권한의 위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철도 공단</u>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 <제9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준공보고 등) ①·② (생략)	제6조(준공보고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”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한국철도공사사장, <u>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</u>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철도공단</u> <u>이사장</u>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